| 투자위험등급:<br>3 등급<br>[중간위험] |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2 년 3 월 28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2 년 4 월 2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5,000 억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UBS 자산운용

목 차

CONTENTS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1) 연평균 수익률
   (2) 연도별 수익률

제 3 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2) 매입 및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제 4 부. 요약 재무정보

[별첨] 장기주택마련투자신탁 상품 세부내용

하나UBS자산운용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UBS자산운용

# 간이투자설명서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펀드코드 |
|---|---|
|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 50408 |

###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5,000 억좌

이 투자신탁은 5,000 억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하나 UBS 자산운용㈜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02-3771-7800)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
|---|---|---|
| 1.주식 | 50%미만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
| 2.채권 | 50%이상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
| 3.자산유동화증권 | 40%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4.어음 | 40%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1) 주식부문

■ 내재가치가 우량하고 장기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한 Buy & Hold 전략 원칙

■ 단기 시황변화 보다는 중장기적 환경변화에 따른 업종별 투자비중 조정

■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매크로 및 산업분석을 통한 업종별 투자비중의 결정 (TOP DOWN APPROACH)
- 포트폴리오 구성은 업종대표 대형주와 성장주 성격의 우량 중형주에 균형 투자
- 코스닥시장에는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등 신성장산업 위주로 투자
- 업종선정시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에 가중치 부여
- 종목은 기업탐방, CEO 및 애널리스트 면담 등 적극적인 Field Survey를 통해 발굴

2) 채권부문

■ 섹터별 자산비중 결정과 이에 따른 기본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크로 하는 운용전략을 채택하되, Enhancement Strategy 병행

- 현선물 차익거래
- 스프레드 매매
- Yield Curve 타기 전략

■ 전략적 운용체제에 의한 듀레이션 전략 구사

■ 채권운용 세부전략

| 운용전략 | | 세 부 내 용 |
|---|---|---|
| 포트폴리오 전략 | 자산구성 | • 채권종목별 Yield Curve 및 스프레드 분석을 통한 교체<br>• 동일 만기/등급 대비 저평가종목 발굴, 편입 |
| | 전략적 듀레이션 | • 운용지침(펀드듀레이션 1.5이하) 및 전략 허용 범위내에서 시장 순응적인 듀레이션 전략으로 펀드수익률 제고 |
| Yield Enhancement | | • 채권종목간 기간/신용 스프레드 분석 및 교체매매<br>• 금리횡보시 Rolling Efect 고려한 Yield Curve 타기 전략 |
| 듀레이션 (Market Timing) | | • 시장 Overshooting 발생에 따른 투자기회 발생시 탄력적인 시장 대응 |

(2) 비교지수 : **(KOSPI*47.5%)+(매경 BP 국공채 1 년지수*52.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47.5%)+(매경 BP 국공채 1 년지수*52.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비교지수가 2009 년 1 월 1 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 수익률*47.5%)+(CD*52.5%) 이었습니다.

(3)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 Top-down 및 Bottom-up 을 병행한 리서치 활동
- 금리 방향성에 의존한 잦은 듀레이션(Duration) 대응 최소화

■ 신용위험 관리방안

- 산업별/발행기업별 분산투자로 신용위험 최소화
-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전문인력(Credit Analyst)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

##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합니다. 또한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 이외에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이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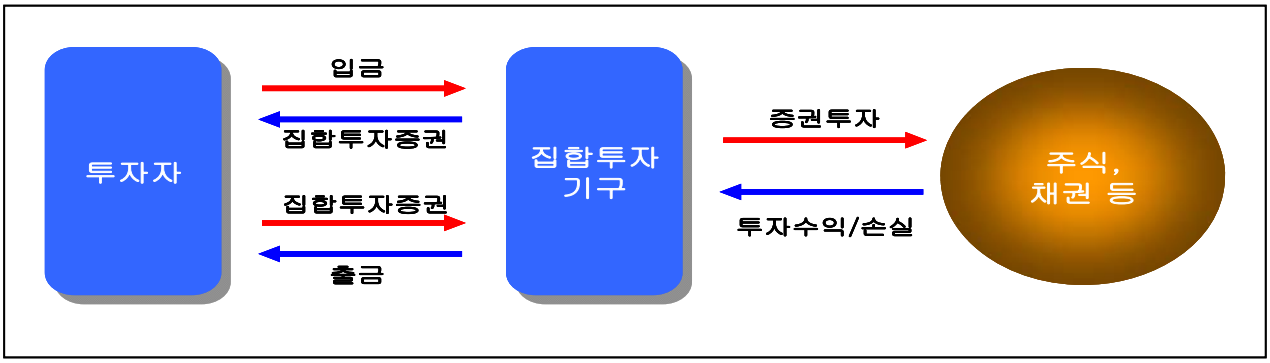


##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위험 |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

| | |
|---|---|
| |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 투자적격등급(BBB-)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5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중간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1 조에 의해 수익자의 주택자금마련 및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저축계약기간이 7 년 이상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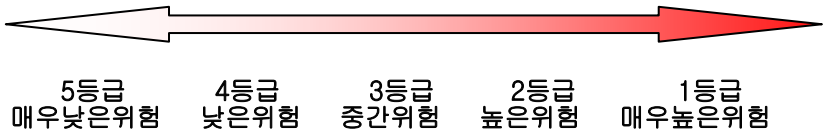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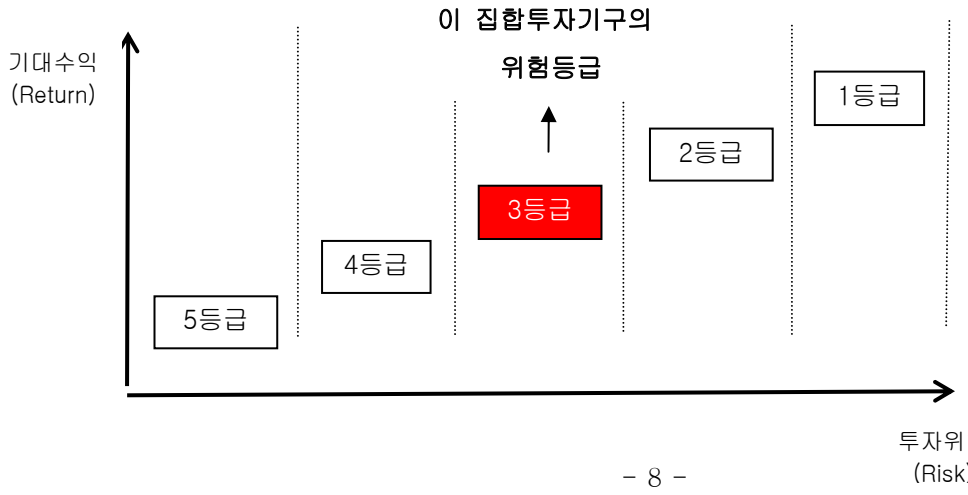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상세설명 |
|---|---|---|
| 1등급 | 매우높은 위험 | •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자기구<br>•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br>•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위험 | •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br>•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br>•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br>•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중간위험 | •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br>•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br>•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낮은위험 | •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br>•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매우낮은 위험 | •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br>•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 운용전문인력(2012.3.28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 다른운용 | |

| | | | 집합투자기구수 | 자산규모 | |
|---|---|---|---|---|---|
| 강민정 | 1975 | 부장 | - | - |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br>- JP 모간자산운용 세일즈 및 주식 애널리스트 11 년<br>- (현)하나 UBS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 | |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 | | | - | -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1) 비교지수: **(KOSPI수익률*47.5%) + (매경BP국공채1년지수*52.5%)**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수익률*47.5%) + (CD*52.5%)이었습니다.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기준일: 2010 년 2 월 7 일, 단위: %)

| 연도 | 최근1년<br>2009.02.08 ~ 2010.02.07 | 최근2년<br>2008.02.08 ~ 2010.02.07 | 최근3년<br>2007.02.08 ~ 2010.02.07 | 최근5년 | 설정일 이후<br>2005.08.08 ~ 2010.02.07 |
|---|---|---|---|---|---|
| 파워장기주택마련1[채혼] | 17.42 | 1.56 | 6.72 | | 9.22 |
| 비교지수 | 15.86 | 1.89 | 4.70 | | 6.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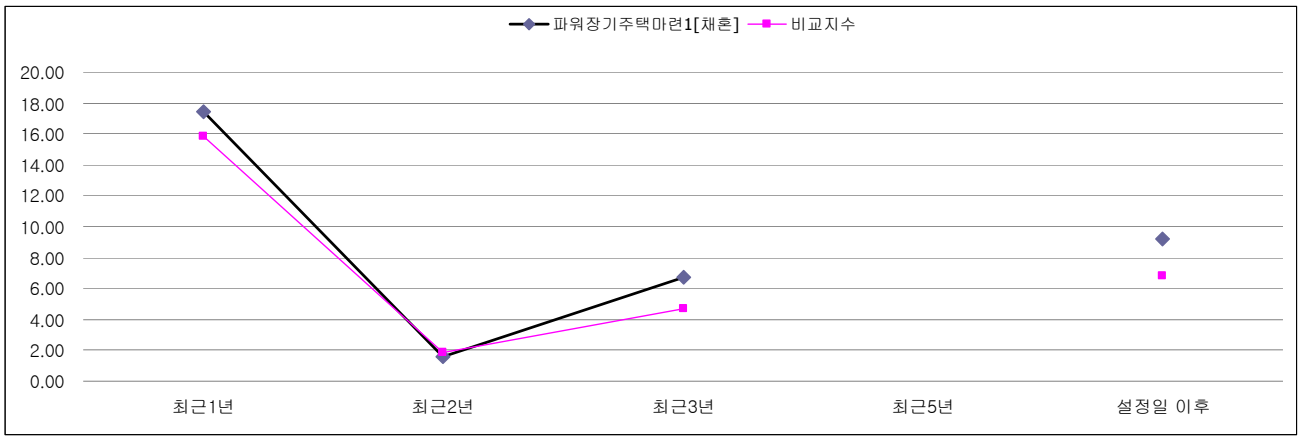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2010 년 2 월 7 일, 단위: %)

| 연도 | 최근1년차<br>2009.02.08 ~ 2010.02.07 | 최근2년차<br>2008.02.08 ~ 2009.02.07 | 최근3년차<br>2007.02.08 ~ 2008.02.07 | 최근4년차<br>2006.02.08 ~ 2007.02.07 | 최근5년차<br>2005.08.08 ~ 2006.02.07 |
|---|---|---|---|---|---|
| 파워장기주택마련1[채혼] | 17.42 | -12.16 | 17.86 | 6.75 | |
| 비교지수 | 15.86 | -10.40 | 10.56 | 5.9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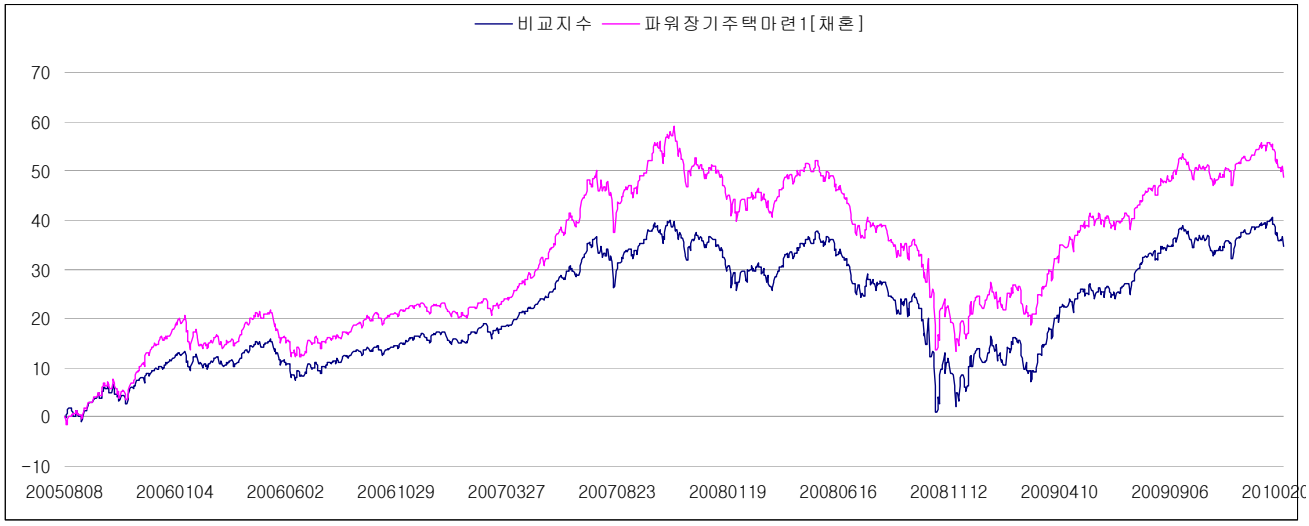


#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 분 | 지급비율 | 지급시기 |
|---|---|---|
| 선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후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환매수수료 |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2010.5.3 ~ 2011.5.2

| 구 분 | 지급비율(연간, %) | 지급시기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436% | 매 3 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0.987% | |
| 신탁업자보수 | 0.030% | |
|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8% | |

| | | |
|---|---|---|
| 기타비용(주 1) | 0.010% | 사유발생시 |
| 총보수 및 비용 | 1.481% | - |
| 증권 거래비용(주 2) | 0.236% | 사유발생시 |

(2) 2011.5.3 ~ 2012.5.2

| 구 분 | 지급비율(연간, %) | 지급시기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436% | 매 3 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0.958% | |
| 신탁업자보수 | 0.030% | |
|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8% | |
| 기타비용(주 1) | 0.010% | 사유발생시 |
| 총보수 및 비용 | 1.452% | - |
| 증권 거래비용(주 2) | 0.236% | 사유발생시 |

(3) 2012.5.3 ~ 2013.5.2

| 구 분 | 지급비율(연간, %) | 지급시기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436% | 매 3 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0.929% | |
| 신탁업자보수 | 0.030% | |
|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8% | |
| 기타비용(주 1) | 0.010% | 사유발생시 |
| 총보수 및 비용 | 1.423% | - |
| 증권 거래비용(주 2) | 0.236% | 사유발생시 |

(4) 2013.5.3 이후

| 구 분 | 지급비율(연간, %) | 지급시기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436% | 매 3 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0.900% | |
| 신탁업자보수 | 0.030% | |
|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8% | |
| 기타비용(주 1) | 0.010% | 사유발생시 |
| 총보수 및 비용 | 1.394% | - |
| 증권 거래비용(주 2) | 0.236% |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0.2.7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0.2.7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 구 분 (원)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비용 | 154,728 | 487,781 | 854,972 | 1,946,158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 | 일반법인 | 금융법인 |
|---|---|---|---|
| 소득세 | 0%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 주민세 | 0%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 계 | 0% | - | - |

### 다. 감면세액 추징

- 수익자가 세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저축계약일로부터 7 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주 1)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6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 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수익자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환매(상환)시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7 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 소득에 대한 과세율

| 구분 | 개인 | 일반법인 | 금융법인 |
|---|---|---|---|
| 소득세 | 14%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 주민세 | 1.4%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 계 | 15.4% | - | -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 구분 |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서류공시]<br>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br>[전자공시]<br>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br>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br>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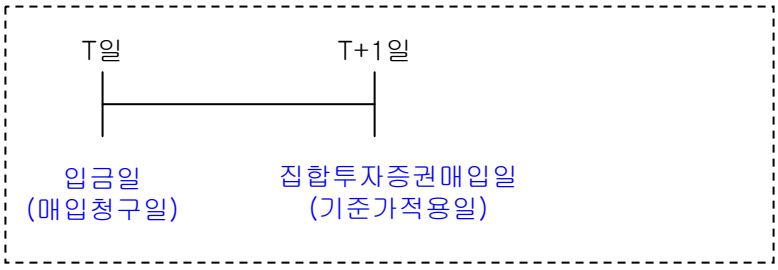


- <u>오후 5시 경과후</u>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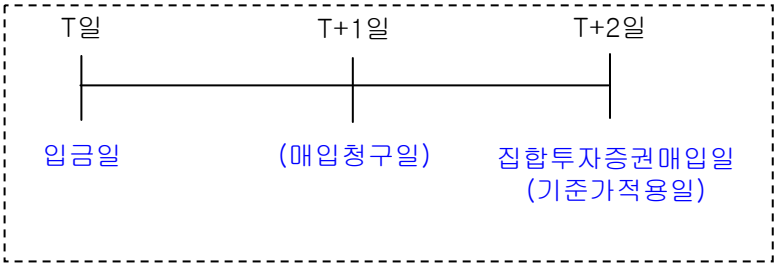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u>오후 5시 이전</u>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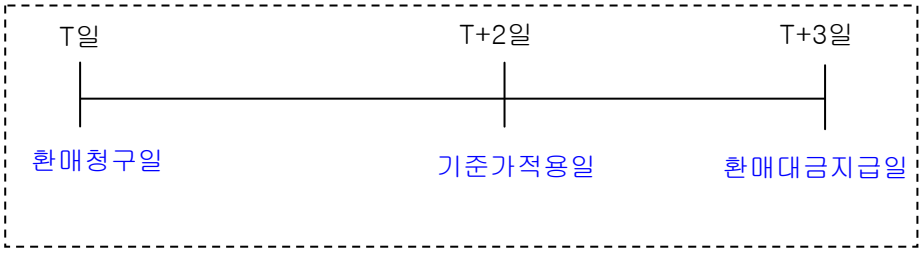


- <u>오후 5시 경과후</u>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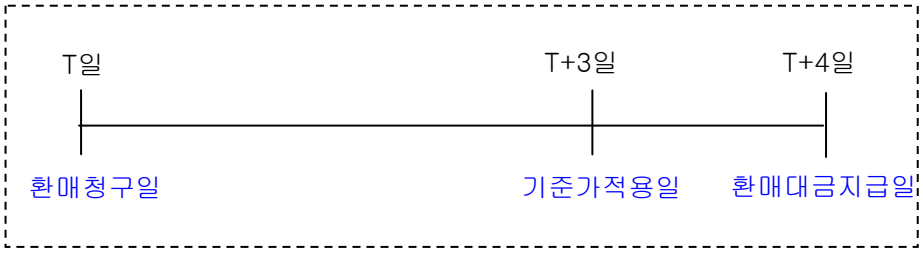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 IV. 요약 재무정보

| 요약재무정보 | 제 5 기(반기) | 제 4 기 | 제 3 기 |
|---|---|---|---|
| | 20100207 | 20090807 | 20080807 |
| Ⅰ .운용자산 | 50,131,009,478 | 45,882,290,415 | 35,972,722,674 |
| 증권 | 49,058,982,183 | 44,324,193,716 | 31,286,102,255 |
| 현금 및 예치금 | 77,027,295 | 55,094,294 | 262,620,419 |
| 기타운용자산 | 995,000,000 | 1,503,002,405 | 4,424,000,000 |
| Ⅱ. 기타자산 | 2,561,759,664 | 3,087,451,074 | 167,423,118 |
| 자산총계 | 52,692,769,142 | 48,969,741,489 | 36,140,145,792 |
| Ⅱ. 기타부채 | 2,395,066,703 | 3,221,215,386 | 2,134,247,430 |
| 부채총계 | 2,395,066,703 | 3,221,215,386 | 2,134,247,430 |
| Ⅰ. 원본 | 49,516,308,808 | 45,636,147,417 | 35,866,643,972 |
| Ⅱ. 수익조정금 | 117,674,025 | -1,145,907,853 | 67,581,206 |
| Ⅲ. 이익잉여금 | 663,719,606 | 1,258,286,539 | -1,928,326,816 |
| 자본총계 | 50,297,702,439 | 45,748,526,103 | 34,005,898,362 |
| Ⅰ . 운용수익 | 1,034,734,149 | 3,686,647,826 | -1,482,668,486 |
| 이자수익 | 582,014,256 | 1,024,722,843 | 819,822,751 |
| 배당수익 | 246,527,494 | 220,238,170 | 178,184,840 |
| 매매/평가차익(손) | 203,950,045 | 2,435,412,751 | -2,486,962,467 |
| 기타이익 | 2,242,354 | 6,274,062 | 6,286,390 |
| Ⅱ. 운용비용 | 371,014,543 | 567,615,677 | 445,658,330 |
| 관련회사보수 | 368,511,344 | 554,418,215 | 433,361,691 |
| 기타비용 | 2,503,199 | 13,197,462 | 12,296,639 |
| Ⅲ. 당기 순이익 | 663,719,606 | 3,119,032,149 | -1,928,326,816 |
| * 매매회전율 | 55 | 143 | 117 |
| * 매매수수료 | 46,940,900 | 98,877,174 | 58,733,521 |

[별첨]

## [장기주택마련투자신탁 상품 세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 구 분 | 주요내용 |
|---|---|
| 가입시한 | 2012년 12월 31일까지 |
| 과 세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
| 가입대상 | 이 투자신탁의 가입은 만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br>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주1) 세대(이하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br>2.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br>주1) 세대의 세대주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봅니다.<br>즉, 세대원 중 3억 이상의 1주택을 소유하면 가입자가 무주택자 세대주일지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
| 가입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
| 저축계약기간 | 7년 이상(당해 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 감면세액추징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함.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br>(주1)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6항<br>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br>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br>·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 ※ 단,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주1)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득공제 |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불입한 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소득공제추징 | 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br>※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br>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br>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주2)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br>(주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br>1. 천재·지변<br>2. 저축자의 퇴직<br>3. 사업장의 폐업<br>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br>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가입대상의<br>확인과 관리 | - 국세청장은 이 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가입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br>- 국세청장은 이 저축의 가입자가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가입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을 모두 갖추었는 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저축가입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

| | |
|---|---|
| | 감면세액 추징 및 소득공제 추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br>-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 또는 만기연장하는 고객들은 가입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7년째 되는 해의 과세연도 종료일에 재검증을 하게 됩니다.<br>(첫 재검증 : 2015.12.31)<br>1. 재검증 대상 :08.1.1이후 신규가입 또는 만기 연장하는 모든 고객<br>(다만 08.1.1 이전 가입자는 08.1.1가입으로 간주하여 모두 재검증)<br>2. 검증요건 : 세대원을 포함하여 세대주가 맞는지,<br>세대원을 포함하여 2주택자인지 등 가입요건의 대략의 사항 검증<br>**★ 재검증 때에는 주택의 기준시가 상승으로 인한 3억 초과 여부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